

임금

○임금 지불 방법

임금이 확실히 지불되도록 노동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1)통화로 2)일을 하는 본인에게 직접, 3)그 전액을 4)매월 1회 이상, 5)일정 기일을 정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만 할뿐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 매년 개정됩니다.

최저임금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관계 상담창구에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효고노동국 감독과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중국어) 0570-001-702
 히메지노동기준감독서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베트남어) 079-224-8181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다국어 대응)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니시노미야노동기준감독서 0798-26-3733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